

공유재산 임대(사용·수익 허가)신청서

○ 재산의 표시

- 소재지 : 목포시 삼학로 92번길 68번지(산정동)
- 구조 : 철골철근콘크리트
- 건물면적 : 지상 2층 건물 4,667.36㎡ 중 1층 카페테리아 105.76㎡

○ 임대(사용)기간 : 2025. 02. 16. ~ 2027. 02. 15. (2년)

○ 임대(사용)목적 : (재)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카페테리아 사용

○ 임대(사용)료 : 원(부가세제외)

○ 임대(사용)조건 : 귀 기념관 정하는 허가조건을 수락함.

위와 같이 임대(사용·수익 허가)를 신청합니다.

2025년 02월 일

신청인 주소

성명

인

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귀중

허 가 조 건

제 1조(사용목적) 사용목적은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카페테리아 운영으로 한다.

제 2조(사용기간)

사용기간은 2025년 02월 16일 부터 2027년 02월 15일까지로 한다.
(사용허가일로부터 2년간)

- ① 사용시간 :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관리·운영 조례 제5조 (관람 및 관람시간) 규정에 정한 시간으로 한다.
- ② 사용제한 :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관리·운영 조례 제4조 (개관 및 휴관) 규정에 의거 시설물 사용을 제한한다.

제 3조(연간임대료)

- ① 1차 연도 임대료(부가세별도)는 0원(금 정)으로 한다.
- ③ 2차 연도 임대료(부가세별도)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1조2에 의거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- ②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.

제 4조(임대료의 납부)

- ① 임대료는 본 기념관에서 정한 계좌로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,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.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)
- ② 임대료는 그 전액을 대부 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.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제2항)

제 5조(사용료의 반환)

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, 잔여 미사용 기간

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.

제 6조(연장, 감면요청 등)

- ① 임차인은 천재·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시설공사로 인한 휴관 등 명백한 본 기념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외에는 연장 또는 감면요청을 할 수 없다.
- ② 천재·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에 대한 일할 계산을 하여 감면할 수 있다. 임대 대상시설물 주변의 공사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있다하더라도 공사기간이 2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손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20일 초과 때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료에 대한 일할 계산을 하여 감면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7조(화재보험료 납부)

임차인은 사용허가 받은 기간 중 사용하는 재산 가액의 화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첫째연도에는 사용허가 신청 시, 둘째연도 이후부터는 사용료 선납 시 가입 및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8조(관리비 및 공과금 등의 납부)

임대재산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은 임차인이 자체 납부하여야 하며, 시설 여건 상 필요 시 임차인은 본 기념관의 별도 기준에 의하여 산출 고지한 관리비 및 공과금을 본 기념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9조(사용허가 재산의 보존)

- 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.
- ② 임차인은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비용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.

제10조(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)

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공공요금 등 일체의 부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사용인의 행위제한)

임차인은 본 기념관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1.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
2.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
3.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

제12조(영업시간)

영업시간은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관리조례에서 정한 개관일 및 관람시간으로 한다.

단, 특별한 경우 기념관장의 사전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.

제13조(사용허가의 취소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
2.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
3. 허가 받은 재산의 권리를 기념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 혹은 양도한 때
4. 본 기념관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재산의 시설물 밖으로 나와 있는 무단적치물 철거명령 등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때
5. 본 기념관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때

제14조(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)

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기념관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.

제15조(사용허가의 취소요청)

임차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(임대재산의 반환)

- ①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기념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.
(다만,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본 기념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)
- ② 임차인은 임대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에 일체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.

제17조(의무 불이행시 사용료)

임차인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본 기념관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, 기념관이 원상 복구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제18조(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)

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81조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9조(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)

임차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기념관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.

제20조(기타 손해배상)

임차인은 사용재산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(사업자등록 등)을 이행 후 영업행위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도 사용인

은 본 기념관에 손해배상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.

제21조(사용허가 재산 청결 유지 등)

임차인은 본 허가재산이 공원지역임을 감안하여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카페테리아를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사용재산과 그 주변에 대한 청결을 유지하고,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사용시설물 밖으로 무단적치물을 내놓아서는 아니 된다.
(단, 허가를 받고 설치한 시설은 제외한다.)

제22조(물품가격 및 판매음식제한)

임차인은 판매하는 물품가격은 소비자 권장가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한정식, 중식 등 냄새과다 식품 및 혐오식품, 주류, 담배 판매를 제한한다.

제23조(영업시설물 설치 및 관리)

- ① 사용재산의 내부 진열대 등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영업시설물은 본 기념관과 사전 협의하여 임차인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허가 기간 종료 시에는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, 임대받은 자가 구입 설치한 시설, 비품 등은 새로운 임차인과 상호 협의하여 인계인수할 수 있으나, 우리기념관과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, 시설물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

제24조(영업신고 및 허가)

각종 영업과 관련한 신고 및 허가는 임차인이 득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한다.

제25조(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관리)

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허가된 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확보한 장비 및 물품의 도난 등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임차인에게 있다.

제26조(시설물변경 및 추가시설설치)

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기념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이나 허가재산의 원형을 변경 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.

제27조(민원발생 방지)

임차인은 사용 허가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민원발생시 임차인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하고, 본 기념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28조(기타 사항)

임차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.

1. 본 기념관에서 제작한 박물관 관련 책 및 상품 위탁판매
2. 기획전시 및 특별 행사시 관련 상품 판매 위탁판매 의무화

제29조(법령 준용)

본 계약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법을 준용하여 본 기념관이 결정한다.

제30조(이전의 결정)

임차인은 본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거나 문구해석상 쌍방 간에 견해차가 있을 때에는 본 기념관의 결정에 따른다.